

순천대학교 공과대학부속공장운영규정

제정 1992. 8. 13.

개정 1994. 11. 28.

개정 1995. 3. 29.

개정 2017. 2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 제13조에 의하여 순천대학교공과대학부속공장(이하 "공장"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공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생 실험·실습에 관한 사항
2. 이 대학교 실험·실습 기자재 제작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
3. 교수연구에 필요한 시설 제공 및 기자재 제작에 관한 사항
4. 기술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공장형 연구설비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이 공장에 공장장과 조교 및 기사를 둘 수 있다.

② 공장장은 공과대학교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공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
③ 공장장은 공과대학장에게 매월 공장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공장에는 행정실·기계공작실·목공실을 두며, 각 실(행정실 제외한다)에는 실장과 기사를 둘 수 있다.

⑤ 각 실장(행정실장은 제외한다)은 이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공장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4조(분장업무) ① 행정실은 서무·회계·보안 및 연구시설·기계부품·재료의 구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② 공작실은 실험장치·소규모기구·시편 등의 제작에 관한 사항과 전산·전자기기의 교정·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③ 목공실은 실험장치·소규모실험대의 제작·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공장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공장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실장과 공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공장장의 추천으로 공과대학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(개정 1995. 3. 29)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
2. 제규정 제정 및 개·폐
3. 예산 및 결산
4. 기타 업무 수행에 관한 제반 사항

제6조(경비) 공장의 경비는 대학회계 또는 기타 경비로 충당한다.(개정 2017. 2. 23.)

제7조(운영세칙) 각 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운영세칙을 정하고,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4. 11. 2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5. 3. 29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2. 23.) (순천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부터⑦까지 생략

⑧ 순천대학교 공과대학부속공장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경비) 본문 중 “국비”를 “대학회계”로 한다.

⑨부터⑭까지 생략